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수시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주소불명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 36주43** (김*배 등 2,399건 세부내역 별첨)
2. 공고기간: 2020. 2. 4. ~ 2. 28. (24일간)
3.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4만원(단, 승합차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상이)
4. 공고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방법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양산로 111), 팩스(02-2670-3642), 인터넷(<http://traffic.ydp.go.kr>)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자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제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세입팀(☎ 02-2670-39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